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의무 (1)



이 준 상

의료행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위 준칙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기술상 적당한 치료를 선택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원래 의사의 주의의무란 『보통 주의를 하는 사람이 사물의 상황에 따라 항상 하여야 할 주의』, 『양식을 갖춘 통상 일반 의사가 하여야 할 주의』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주의』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 미국의학협회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표준적 주의의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역에 있어서 평균적인 의사가 가져야 할 그 당시의 주의와 의술을 사용함에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진료 상의 주의의무이고, 이외에도 의료법 상의 의무, 형사법 상의 의무가 있다.

1. 진료 상의 의무

진료의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았을 때 이에 응하여, 또는 이미 진료계약이 성립해 있을 때 진료의 요구에 응하는 의무를 말한다. 진료의무는 진료행정 상의 의무이고, 의사에게 의료업무의 독점을 인정하는 의사면허제도의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한다.

따라서 진료의무는 의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환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개개

의 의사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의무는 생명·신체의 구호를 업무로 하는 의사 본래의 직업 윤리를 단순히 법적으로 혼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은 진료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외국의 입법례에서 현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법 제 16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 조항을 과연 진료의무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반대 해석하면 진료의무에 관한 규정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또한 진료 거부 의사를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견해가 없으나 『그 직업의 성질 상 급급환자에 한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여 환자에

대한 모든 경우의 의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의사가 사회의 고등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인물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본학자의 견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 9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제 32조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 증진을 국가에 의무지우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의해 의료법은 의료를 의사의 독점적 의무로 하고 의사의 일반적 의무로서 『국민 보건 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생활의 확보』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진료권과 능력을 의사에게만 부여하는 법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뿐이라는 것이 되고 여기에 진료의무가 가해지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의사의 진료거부

진료의무는
의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다.



는 국민의 건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동의 자유·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상황 속에서 진료의무의 강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의사측에서 본다면 어느 범위에서 진료의무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 할 수 있겠다.

가. 환자의 진료요구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 16조 1항에 의해 환자로부터 진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면 진료의무 위반이 되고, 또한 의료법 제 53조 의료법 시행령 제 30조 2항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 내지는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처벌 이유로는 『의사로서의 품위 손상』,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는 정상적인 진료의무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법 상의 진료도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 현행법은 이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도 없다. 생각컨대,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사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사의 부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모두 진료거부로 본다면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의사 개인적 용건과 사생활의 이익

**진료의무의
근거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면,
그 전제로서
수진 가능 지역에
진료기관이 설치되어
의사가 적정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을 위해 환자의 용태에 따라 의사의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는 해석도 타당하다고 본다.

나. 의료시설과의 문제

의료의무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의료시설의 적정한 배치를 들 수 있다. 즉 진료의무의 근거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그 전제로서 수진 가능한 지역에 진료기관이 설치되어 의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의료시설이 시급한 상태에서 의사의 진료의무만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의사로서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료거부의 정당 사유는 의료시설이 불비된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정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속>

<필자=한국의료법학회장·고려의대 교수>